

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사례

사례 1> 법 제16조 위반시, 도급금액이 4억 57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?

위 반 행 위	해 당 법조문	영업정지 기 간	과징금의 비율(%)			
			5천만원 까지	1억원	5억원	30억원 이상
1.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	법 제82조 제2항제1호	8월	30	24	16	8

적용례>

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

$$\frac{\text{구역상한과징금율} - \text{구역하한과징금율}}{\text{구역상한도급금액} - \text{구역하한도급금액}} = \frac{16\% - 24\%}{5\text{억원} - 1\text{억원}} = \frac{-8\%}{4\text{억원}} = -2\frac{\%}{\text{억원}}$$

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

$$\text{도급금액} - \text{구역하한도급금액} = 4\text{억 } 57\text{백만원} - 1\text{억원} = 3\text{억 } 57\text{백만원} = 3.57\text{억원}$$

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

$$3.57\text{억원} \times -2\frac{\%}{\text{억원}} = -7.14\%$$

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

$$24\% - 7.14\% = 16.86\%$$

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

$$4.57\text{억원} \times 16.86\% = 0.770502\text{억원} = 7\text{천 } 7\text{백 } 5\text{만 } 2\text{백원} \approx 7\text{천}705\text{만원}$$

※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1천원미만은 버림.

사례 2> 아래조항 위반시, 재하도급금액이 29억 88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?

위 반 행 위	해 당 법 조 문	영 업 정 지 기 간	과 징 금 의 비 율 (%)			
			5천만원 까지	1억원	5억원	30억원 이상
6. 재하도급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	법 제82조 제2항제2호	4월	16	12	8	4

적용례>

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

$$\frac{\text{구역상한과징금율} - \text{구역하한과징금율}}{\text{구역상한도급금액} - \text{구역하한도급금액}} = \frac{4\% - 8\%}{30\text{억원} - 5\text{억원}} = \frac{-4\%}{25\text{억원}}$$

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

$$\text{도급금액} - \text{구역하한도급금액} = 29\text{억 } 88\text{백만원} - 5\text{억원} = 24\text{억 } 88\text{백만원} = 24.88\text{억원}$$

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

$$24.88\text{억원} \times \frac{-4\%}{25\text{억원}} = -3.9808\%$$

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

$$8\% - 3.9808\% = 4.0192\% \approx 4.019\% (\because \text{건설업관리지침})$$

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

$$29.88\text{억원} \times 4.019\% = 1.2009\text{억원} = 1\text{억 } 2\text{천 } 9\text{만원} = 1\text{억 } 2\text{천만원}$$

※ 별표2 나목 비고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"직선보간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(1억2천9만원)"이 "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(1억2천만원)"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으로 하게 되므로, **과징금은 1억 2천만원이 됨**